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8. ~ 6.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1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개정이유

- '20년 6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단지 지역에 통·반을 신설해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2] 매곡동 관할구역

- 3개 통 및 11개 반 신설 : 서한이다음 아파트 1, 2단지

※ 16통(4반), 17통(4반), 18통(3반) 신설

- 서한이다음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기존 11통 2반의 일부 관할구역 제외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2개통, 11개 반 신설 : e편한세상 아파트 1, 2단지

※ 42통(5반), 43통(6반) 신설

- e편한세상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기존 10통 1반의 일부 관할구역 제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연간 24,50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4. 16. ~ 2020. 5. 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7.(여성가족과-76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3. 27.(자치혁신과-493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6.(기획예산실-49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16.(순천시 공고 제2020-79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매곡동 11통 2반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16통, 17통, 18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매곡동	11	1	현행과 같음
		2	443, 443-1~443-13, 444, 445, 446-4~446-11, 449, 449-3, 450-1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
<신설>	16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1동
		2	102동
		3	103동, 상가동
		4	104동
<신설>	17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105동
		2	106동
		3	107동
		4	108동
<신설>	18	1	매곡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201동
		2	202동
		3	203동
⋮	⋮	⋮	⋮

별표 2 중 삼산동 10통 1반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고, 42통, 43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 확정)
삼산동	10	1	<u>용당동 581-1~585-3, 650~707(681-1제외),</u> <u>719~720, 743-6~743-24</u>
		2	현행과 같음
⋮	⋮	⋮	⋮
<u><신설></u>	<u>42</u>	<u>1</u>	<u>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상가동</u>
		<u>2</u>	<u>102동</u>
		<u>3</u>	<u>103동</u>
		<u>4</u>	<u>104동</u>
		<u>5</u>	<u>105동</u>
<u><신설></u>	<u>43</u>	<u>1</u>	<u>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u>
		<u>2</u>	<u>107동</u>
		<u>3</u>	<u>108동</u>
		<u>4</u>	<u>109동</u>
		<u>5</u>	<u>110동</u>
		<u>6</u>	<u>201동, 202동</u>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매곡동	11	1	현행과 같음	매곡동	11	1	현행과 같음
		2	443, 443-1~443-13, 444, 445, 446-4~446-11, 449, 449-3, 450-1, 446, 463, 463-12, 463-19			2	443, 443-1~443-13, 444, 445, 446-4~446-11, 449, 449-3, 450-1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	⋮	⋮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삼산동	10	1	용당동 581-1~585-3, 650~720, 743-6~743-24	삼산동	10	1	용당동 581-1~585-3, 650~707(681-1제외), 719~720, 743-6~743-24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삼산동	42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상가동	삼산동	42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상가동
		2	102동			2	102동
		3	103동			3	103동
		4	104동			4	104동
		5	105동			5	105동
<신설>	43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신설>	43	1	용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2	107동			2	107동
		3	108동			3	108동
		4	109동			4	109동
		5	110동			5	110동
		6	201동, 202동			6	201동, 202동
⋮	⋮	⋮	⋮	⋮	⋮	⋮	⋮
⋮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 이·통·반장 임명(5개 통, 22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이·통장	850	855	5	
반 장	2,329	2,351	2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세입(a)						
세출(b)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국 비						
도 비						
시 비	110,250	12,250	24,500	24,500	24,500	24,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4,500천 원/년 (통장 5명, 반장 22명)
- 산출기초
 - 통장 기본수당 : $300,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5\text{명} = 18,000,000\text{원}$
 - 통장 상여금 : $300,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5\text{명} = 3,000,000\text{원}$
 - 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text{원} \times 2\text{회(월)} \times 12\text{월} \times 5\text{명} = 2,400,000\text{원}$
 - 반장 수당 : $25,000\text{원} \times 2\text{회(설, 추석)} \times 22\text{명} = 1,100,000\text{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조태훈(☎749-5453)
자치행정팀장 양영만(☎749-5625)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1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시행) 개정 사항에 대해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조정함

2. 주요내용

- 조례〔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
 - 은행 자금 유동성 평가 항목 신설(유동성커버리지 비율)
 - 정기·공금예금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상향 조정
 - 자치단체 협력사업 계획 배점 하향 조정
 - 기타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배점 및 항목 개정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5. 1. ~ 5. 21.)결과 : 의견 제출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23.(여성가족과-873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27.(기획예산실-58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5. 1.(순천시 공고 제2020-917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4점) - 국내평가 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u>30</u>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u>27</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u>(6점)</u> - 국내평가 기관 (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가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u>(10점)</u> 평가	<u>(10)</u>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 기관 <u>(4점)</u> - 국내평가 기관 (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가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u>(8점)</u> 평가	<u>(8)</u>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u>(7점)</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u>(7점)</u> - 자기자본이익율 <u>(6점)</u> 〈신 설〉	<u>(20)</u>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u>(6점)</u>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u>(6점)</u> - 자기자본이익율 <u>(5점)</u> -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u>(19)</u>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u>18</u>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u>20</u>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u>(6)</u> (4) <u>(5)</u> (3)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u>(7)</u> (4) <u>(6)</u>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u>21</u>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u>21</u>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u>(5)</u> <u>(7)</u> <u>(9)</u>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u>(8)</u> <u>(6)</u> <u>(7)</u>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u>22</u>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u>25</u>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신 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u>(5)</u> <u>(7)</u> <u>(7)</u> (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u>(6)</u> <u>(8)</u> <u>(8)</u>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u>9</u>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u>7</u>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u>(5)</u> <u>(4)</u>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u>(5)</u> <u>(2)</u>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28호
----------	--------

○제안연월일 2020. 5. 27.

:
○제안자 이현재 의원
: 이복남 의원

1. 개정이유

-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직의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 용어의 정의 수정(제2조제2호)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위촉대상자 추가 등(제8조)

- 위원회 구성 : 11명 이내 → 15명 이내(변경)
- 위촉대상자
 -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신설)
 - 5. 순천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변경)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11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제8조 중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5호(중전의 제4호)를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제 2 조 (정 의) ----- -----.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4.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5.~6.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 3.~4. (현행 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명 6.~7. (현행 제5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1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일부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20. 4. 17. ~ 5. 7.(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20. (여성가족과 - 85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13. (기획예산실 - 53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16. (순천시 공고 제2020 - 816호)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략) ② <u>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1. ~ 3. (생략)	제11조(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1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제정이유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위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6조)
- 보험가입 및 준용규정(안 제17조 ~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4. 16. ~ 5.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6.(여성가족과-831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16.(기획예산실-547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16.(순천시 공고 제2020-821호)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만잡월드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관일”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순천만잡월드는 제4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2. 단체이용객을 인솔하는 자(이용객 15명 당 인솔자 1인)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
4. 구급·비상 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접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6. 직업진로와 관련된 행사 등 순천만잡월드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이용료의 50%를 할인 할 수 있다.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3.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의 경우 주말이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체험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흡연, 폭력 등 체험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임신부,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제12조제1항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
2. 외부 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5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업체험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천만잡월드 시설 이용료(제5조 관련)

1. 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체험자	보호자	비 고
어린이 체험관 (5세~10세)	평일	18,000	8,000	
	주말·공휴일	21,000	9,000	
청소년 체험관 (11세~19세)	평일	12,000	—	체험추가요금: 6,000/1개
	주말·공휴일	15,000	—	체험추가요금: 7,000/1개
[비고] ▪ 15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무료 관람 ▪ 청소년체험관 보호자 동반 희망 시 어린이체험관 보호자와 동일 요금 적용 (20세 이상 성인은 체험관 이용 불가, 시설 입장 희망 시 보호자 요금 적용) ▪ <u>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은 입장 시 신분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자에 한함</u>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료), 제10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만잡월드 이용료 등 수입 및 시설 운영비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6,629,028	533,060	1,415,192	1,485,192	1,562,792	1,632,792
세입(a)	33,445,698	5,796,394	6,728,526	6,848,526	6,976,126	7,096,126
세출(b)	26,816,670	5,263,334	5,313,334	5,363,334	5,413,334	5,463,334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계	33,445,698	5,796,394	6,728,526	6,848,526	6,976,126	7,096,126
이용료	16,304,098	2,479,594	3,306,126	3,406,126	3,506,126	3,606,126
기업광고유치	1,687,500	247,500	330,000	350,000	370,000	390,000
임대수입	454,100	69,300	92,400	92,400	100,000	100,000
운영비 지원	15,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2. 세출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계	26,816,670	5,263,334	5,313,334	5,363,334	5,413,334	5,463,334
인건비	18,672,240	3,654,448	3,694,448	3,734,448	3,774,448	3,814,448
경상경비	4,938,355	967,671	977,671	987,671	997,671	1,007,671
공과금	2,716,200	543,240	543,240	543,240	543,240	543,240
일반관리비	489,875	97,975	97,975	97,975	97,975	97,975

※ 매년 최저임금 및 입장객 증가에 따른 체험재료비 상승분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26,816,670	5,263,334	5,313,334	5,363,334	5,413,334	5,463,334
국 비	10,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도 비	5,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시 비	11,816,670	2,263,334	2,313,334	2,363,334	2,413,334	2,463,334

※ 국·도비 지원액 미확정 - 국회 등 건의 활동 추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 202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구성비율	산출기준
지 출	인 건 비	관리직군 인건비 (a)	896,805	17.04%	42,704,983원 × 21명
		강사직군 인건비	2,757,643	52.39%	34,470,540원 × 80명
		소 계 (A)	3,654,448	69.43%	
	경 상 경 비	체험재료비	257,136	4.89%	1,100원 × 233,760명
		인력교육 및 복리후생비 외	270,671	5.15%	2,679,910원 × 101명
		수리수선비 등 시설 유지	439,864	8.37%	36,655,333원 × 12개월
		소 계 (B)	967,671	18.41%	
	공 과 금	제세공과금	205,237	3.90%	부가세, 공과금, 세금
		관리직군 사회보험료 (b)	82,946	1.58%	3,949,809원 × 21명
		체험직군 사회보험료	255,057	4.85%	3,188,212원 × 80명
		소 계 (C)	543,240	10.33%	
	지 출 합 계 (D)			5,165,359	98.17%
일반관리비 (E)			97,975	1.83%	[(a + b) × 10.0%]
총 세출 (F)			5,263,334	100.00%	[D + E]
수 입	입장료·이용료		2,479,594		가동률 80% 기준
	기업광고 유치 수입		247,500		유치목표 기준
	카페테리아 임대 수입		69,300		7,700,000원 × 9개월
	운영비 지원		3,000,000		국·도비 지원 시
	총 세입 (G)		5,796,394	100.00%	
총 세출 및 총 세입 차액			533,060		[F - G]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 749-4400)

일자리경제국 잡월드기획팀장 김선숙 (☎ 749-4411)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2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제정이유

-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해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사업(제1조 ~ 제4조)
- 운영시설, 운영 및 휴관,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 제12조)

- 운영시설 : 체육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
- 운영시간 : 평일 06:00~22:00, 토요일 06:00~18:00(매주 1,3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3조 ~ 제17조)

- 위탁관리/기간 :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5년 이내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부시장) 1명 포함 10명 이내(성별 고려)
 - 시 공무원(5급이상), 시의원(2명), 체육단체 장 또는 관리자, 체육·회계·경영 등 분야 전문가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4. 16. ~ 5.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6.(여성가족과-833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14.(기획예산실-53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14.(순천시 공고 제2020-810호)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순천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유아 :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
 -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 다.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라. 일반 :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
 - 마. 경로 : 만65세 이상인 사람
2.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입장”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팔마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체육진흥 육성 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체육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다목적실 등
2.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6조(운영 및 휴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센터를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6:00 ~ 22:00
2. 토·일요일 06:00 ~ 18:00

③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허가는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이용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이용인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적이 사유로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 소속 체육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4.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협약 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을 위해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프로그램		기 준	월이용료 (강습비포함)	월자유이용료	일일이용료	비 고	
배드민턴	일 반	1개월	50,000~100,000	30,000	3,000	강습연령대, 이용횟수, 수준별 등 요금 차등적용	
	청소년	1개월		20,000	2,000		
	어린이	1개월		15,000	1,500		
탁 구	일 반	1개월		40,000	4,000		
	청소년	1개월		30,000	3,000		
	어린이	1개월		20,000	2,000		
택 견	일 반	1개월	20,000~5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소년	1개월					
	어린이	1개월					
체력단련장(헬스장)		1개월	해당없음	20,000	2,000		
필라테스, 라인댄스, 쑈바방송댄스 등		1개월	20,000~6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프로그램 과목, 이용횟수, 수준별 등 요금 차등적용
다목적체육관 (전용이용) 시간당		체육행사	해당없음	20,000	해당없음		냉난방사용시 사용료 30% 가산
		일반행사	해당없음	30,000			
○ 일일이용 : 4시간 기준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만65세 이상의 사람	50%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 를 소지한 자	50%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자 및 그 가족	50%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자	50%	기증자
	10%	기증희망자
2종목 이상 동시 등록 시	각 종목별 10%	
단체입장 시(같은 소속이나 일행 20명 이상)	10%	
회원 장기 등록 시(3개월)	5%	

[별표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별	반환비율(금액)
1회 입장 이용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00%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이용개시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100%
	이용권 그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0%
회원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0%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한 금액
	프로그램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운영 및 휴관) :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 안 제17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2,2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2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시 비	615,000	99,000	129,000	129,000	129,000	129,000
기 금	270,000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기 타 (민간위탁)	1,365,000	201,000	291,000	291,000	291,000	291,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원)

비목별			금 액	비고
합 계			450,000,000	
고 정 비	인 건 비	소 계	262,000,000	
		센터장(1명)	40,000,000	
		행정직원(2명)	60,000,000	기금(시비)
		시설관리(1명)	15,000,000	
		전임지도자(3명)	75,000,000	
		보조지도자(9명)	72,000,000	
	보 험 료	소 계	28,172,430	
		국민연금보험(4.5%)	11,790,000	
		국민건강보험(3.335%)	8,737,700	
		장기요양보험(건강*10.25%)	895,610	
		고용보험(1.65%)	4,323,000	
		산재보험(0.926%)	2,426,120	
	운 영 비	소 계	60,827,570	
		운동용품 및 비품구입비	30,000,000	
		홍보비 및 운영비 등	30,827,570	
변 동 비	소 계		99,000,000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400,000	시설관리비
	공공운영요금(전기,가스,수도)		63,600,000	
	시설장비유지비 등		21,000,000	

※ 2021년부터 행정인력(2명) 인건비 지원 : 60백만원(기금30, 시비30)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요청(인건비 50% 지방비 편성)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과장

양선길(☎ 749-6650)

스포츠마케팅팀장 유귀남(☎ 749-6651)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2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개정이유

- 인용 법령 조항 및 법령 개정
- 상위법령의 관리위탁 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 시 갱신에 관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제4조”를 “제5조”로 개정(안 제1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령 개정(안 제2조, 제6조)
- 관리 운영 위탁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8조)
 - “1회에 한하여” → “한 번만”
- 수의계약에 따른 위탁 시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4. 16. ~ 5.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6.(여성가족과-83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9.(전략기획과-518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16.(순천시 공고 제2020-7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번만” 으로 하고,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한 번만</u>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226호
----------	--------

발의연월일 : 2020. 5. 27.

김미연 의원,
발의자 : 남정옥 의원,
이영란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건축물의 신축 등 인허가 시 부과하여 준공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이 미수납액으로 장기간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로 변경하고자 함.(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개선사항 지적)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개정(안 제21조제1항제6호)
 -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개산금액으로 통보
 - 건축물의 신축 등의 경우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 부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시 부과
 -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다만 사용승인 전 인허가 수리 전 납부)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 개정(안 제23조제4항)
 - 안 제21조제1항제6호 준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고시한 단위단가 및 산정기준으로 확정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부과한다.

나. 영업신고·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승인(준공) 전까지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사용승인(준공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수리 전으로 한다.

라. 납부고지서는 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중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를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제21조제1항제6호를 따르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6. -----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고시한 단위단가 및 산정기준으로 확정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에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나. 영업신고·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신설〉	다.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승인(준공) 전까지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사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략) ④ <u>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용승인(준공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수리 전으로 한다.</u> <u>라. 납부고지서는 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제21조제1항제6호를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227호
----------	--------

발의연월일 : 2020. 5. 27.

발 의 자 : 김병권 의원,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기준(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종류(안 제6조)
 -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안 제7조 내지 제9조)
 - 관리단(또는 관리인) 신청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의 정산보고 등(안 제10조 내지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
 - 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회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관리단집회 의결일		사용 승인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접 수 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86)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단 결의 및 관리인 선임 동의서

사 업 명 :

공동주택명 :

주 소 :

관 리 인 : 성명)

호수)

생년월일)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순천시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결의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에 명시한 _____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연번	동/호수	소유자 성명	연 락 처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연번	동/호수	소유자 성명	연 락 처	서 명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신청액 천원)
- 산출근거(견적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

☐ 사업목적

-
-

☐ 추진기간 : . . ~ . .

☐ 사업내용

- 사업하고자 하는 물량 등을 상세, 구체적으로 기재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비고

붙임 : 원가계산서 1부(사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세부산출견적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사업 현장 관련 자료

☐ 사업명 :

☐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도면 : 사업 현장 설명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 요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4】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 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 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 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 경비	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계좌번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사인)
관리인 (직인,사인)

순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예금주 명의를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공동주택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공동주택명) :

신청자 :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청구서

○ 공동주택명 :

○ 주 소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청구금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청구액	잔 액	비 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예 금 주 : (인)

신 청 자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착 수 계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시 공 자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정산보고서

- 접수번호 : 적지 마세요
- 공동주택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또는 사인)
 관리인 (직인 또는 사인)

- 실무책임자 : 직위 관리인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정 산 보 고 서

1.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대 지 위 치 :

2.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3. 사업비 지출내역

요 목	지출내역	금 액	비 고
계			
- 인 건 비 - 자 재 비 - 기타경비			※세금계산서, 인건비등 지출 관련증빙서류 첨부

위와 같이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별도첨부 : 각종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1. 자재비		
자 재 명	금 액	비 고
자재비 소계		
2. 노무비(별첨 인부사역부)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소계		
3. 기타 경비등		
구 분	금 액	비 고
기타경비 소계		
4. 지출 총계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금액	원(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착공일자	20 년 월 일
준공일자	20 년 월 일
비 고	

20 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결과 기 신청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완료 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청자 관리단(대표자) (직인, 사인)
 관리인 (직인, 사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사일지 및 사진대장

	확인자	(인)
공 사 명		
공 정 률	%	
공사일시	년 월 일 (요일)	
세부내용	· ·	
사진자료		
사진자료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2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제안이유

- 택시감차 실적 초과 달성 시 신규 택시 운송 사업을 면허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명
(현행)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
(개정)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 조문개정 : 제1조(목적)
- 조문신설 :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근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4. 16. ~ 5.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3.(여성가족과-816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9.(기획예산실-51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16.(순천시 공고 제2020-783호)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 을 “제15조제4항”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신규면허) 순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 ----- ----- ----- <u>15조제4항</u> -----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조(신규면허) <u>순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한다.</u>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2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5. 25.

1. 개정이유

- 유료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기계식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요금 선납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완화(안 제4조제4항제7호)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2조제1항, 제4항)
 -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제외
 -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대수 1/2 완화대상을 전체로 확대
-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방식 추가(안 [별표 2])
 - 유료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 입차 차량의 주차요금 선납 방식 추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4. 8. ~ 4. 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여성가족과-714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6.(기획예산실-49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8.(순천시 공고 제2020-748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순천시 관할구역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1급지	소형	5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대형	700원	11,000원	100,000원 이하
2급지	소형	400원	5,000원	50,000원 이하
	대형	6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운영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30분 미만일지라도 30분으로 본다.
4. 급지의 구분은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6. 1회 주차요금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7. 시장은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이내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8.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9.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선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u> 를 부착한 자동차 ⑤ (생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u> 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u>순천시 관할구역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u> ② ~ ③ (생략) ④ 법 <u>제19조의13제4항</u>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u>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u>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19조의13제6항</u> ----- ----- ----- ----- <u>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u>

1. 2단 단순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2.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3. 2단 경사PIT식 기계식주차장치
4. 2단 승강PIT식 기계식주차장치
5. 2단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 고>

1. ~ 8. (생 략)

<신 설>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 고>

1. ~ 8. (현행과 같음)

9.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선납할 수
있다.